



KOLAS-R-009 : 2017

---

#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A ISO Guide 30(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및 KS A 0002(측정학용어)에 따른다. 단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 ①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을 공인하는 인정기구를 말한다.
- ② “인정마크”라 함은 공인받은 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 ③ “공인기관”이라 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표준물질생산기관을 말한다.
- ④ “KOLAS 로고”란 한국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 ⑤ “표준물질생산기관”이라 함은 KS A ISO Guide 34(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이나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기업)을 말한다.
- ⑥ “표준물질”이라 함은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잘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 ⑦ “인증표준물질”이라 함은 인증서가 수반되는 표준물질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값이, 그 값을 나타내는 단위의 정확한 현시에 의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 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첨부된 것을 말한다.
- ⑧ “위탁기관”이라 함은 계약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표준물질생산기관을 대신하여 (인증)표준물질을 제조 또는 특성화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기업)을 말한다.

- ⑨ “e-KOLAS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 제2장 인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내에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의 적합성평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인정기구의 업무)**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정기구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인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구 운영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는 법, 영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15인 이내)인 인정위원회, 비상임위원회(위원회별 10인 이내)인 인정제도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화학조성, 물리적특성, 공학적특성 등 표준물질 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12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위원 위촉)**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하며 학계에서는 교수, 공무원은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상임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한 경우

**제8조(위원회 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주요사항
  3.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정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해관계 분석에 관한 사항
- ③ 교육훈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④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표준물질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표준물질의 소급성, 균질도, 안정도 평가, 특성값 부여 등 기술적인 사항
  4. 현장평가 시 제기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직원 중에서 품질책임자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인정위원회 위원은 인정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정기구 운영과 경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2.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및 지침
3. 공통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 기술기준 및 지침
4. 인정기구 또는 관련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에 관련된 지침
5. 기타 공인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 사무국 직원, 평가사 및 공인기관 인정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품질책임자(정, 부)를 지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의 인정획득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개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유지)** ① 인정기구의 장은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인쇄물 또는 e-KOLAS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정 및 의사결정과정
2. 인정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인기관의 현황, 인정분야 및 인정일자
6. 기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정수여일자, 인정범위 등 KOLAS 공인기관명부(directory)를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 또는 책자 등을 통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인력의 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평가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사의 자질 향상과 양질의 평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은 직접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평가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과정에 관련된 인적자원의 자격, 교육, 경력, 평가 기록을 최신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평가사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규범,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3조(경영시스템 검토)**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가 관련법규 및 국제기준의 요건에 일치되고,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년1회 이상 내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인정시스템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 시스템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이 실증된 경우 내부심사 빈도를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검토결과 제기된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정기준 등

**제14조(인정분야)** ①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분야의 분류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 분류기준 외에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인정 및 평가기준)** ① 표준물질생산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법, 시행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단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2. KS A ISO Guide 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3.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4.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ISO/IEC 17025)
5.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6. KS Q 4001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7.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국제표준화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인기관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기술된 기준 이외에 기술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인기관에 별도의 기술지침을 보급할 수 있다. 단, 이 지침은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인정절차 등

**제16조(인정절차 안내)**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정요건을 기술한 문서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게 인쇄물 또는 e-KOLAS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그 소속기관의 국적 및 업무영역과 관계없이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 ① 공인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한다.(단,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는 별도제출)

1. 신청서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제출)
2. 인정신청분야
3. 제조 및 시험분석 설비 보유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표준물질 생산계획서 및 협력기관과의 업무협력 흐름도
6. 표준물질의 특성화 방법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
7. 측정방법 및 지침서(물품의 제조, 시료채취, 취급, 보존, 보관, 포장, 위탁 기관과의 수송, 측정불확도의 산정 및 측정데이터에 대한 분석 포함)
8. 인증값에 대한 불확도 총괄표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② 공인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정범위 확대, 사후관리, 갱신평가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한 신청서류 및 품질문서가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확인사항
5. 평가 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 ④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반은 인정신청기관이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평가한다.
- ⑤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e-KOLAS 시스템에 등록 하고, 인정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절차,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평가업무절차, 평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평가결과 심의)**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인정신청기관이 공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 중에서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기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정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 정지, 취소함을 통보한다.

**제20조(인정 및 공고)**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제반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공인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4. 최초인정일자, 유효기간
5. 인정분야
6. 인정 정지 또는 휴지일 경우 기간 및 인정범위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2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공인기관은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인증표준물질과 함께 제공될 인증서 및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증서의 작성방법, 그리고 인증서, 서류, 홍보자료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인정범위확대 및 갱신평가

**제22조(공인유효기간 및 인정요건의 유지 등)** ①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정범위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방법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
2. 불확도 요인 분석 및 산정방법의 개발
3. 표준물질 특성값의 소급성절차 확립 및 관련증거 입증
4.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③ 공인기관은 발행한 표준물질인증서 및 이와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범위확대)** ① 공인기관은 기 인정받은 표준물질분야 및 범위 외에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인정기구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서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공인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방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e-KOLAS 시스템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인정기구의 장이 공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 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사후관리 대상기관이 인정범위확대 신청을 해왔을 경우에는 사후관리와 함께 인정범위확대를 위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표준물질 인증서 관련 이의 제기 또는 분쟁 발생 시
2. 표준물질의 균질성 또는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3. 유통중인 표준물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갱신평가와 인정범위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 및 평가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회는 갱신 부분과 인정범위확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6조(인증값의 모니터링)** ① 인정기구의 장은 표준물질생산기관의 품질 보증 능력을 평가하고 표준물질의 인증값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유통되고 있는 표준물질의 특성 및 그 인증값(불확도 포함)이 의도된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에 대한 모니터링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 받은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다.

**제27조(공인기관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 운영요령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영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 또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관명,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또는 주요 설비 이동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대표자, 품질책임자(정, 부) 및 기술책임자(정, 부)의 변경
6. 위탁기관의 변경
7. 인정분야 및 범위
8. 인정기준에 대한 공인기관의 충족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② 공인기관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단, 인정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인정서)는 별도제출)

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공인기관은 대표자, 품질책임자(정, 부), 기술책임자(정, 부)의 변경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표준물질생산기관 대표자·책임자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표준물질 생산 및 인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표준물질의 생산 및 인증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될 때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인정기구의 장이 공인기관에 표준물질 생산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공인기관은 표준물질 분류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물질생산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인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지사유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⑤ 공인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휴지를 할 경우 6개월 이내로하며 2회까지만 휴지를 할 수 있다.

**제29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KOLAS 인정마크 사용중지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 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결과 기술인력, 설비 및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5. 사후관리를 제24조의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6. 인정받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인정마크가 들어간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7. 인증값의 모니터링 결과 표준물질의 특성 및 그 인증값이 의도된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③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KOL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책임자 또는 해당분야 표준물질생산 실무자없이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4. 허위로 표준물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5.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표준물질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7. 시판품 조사결과 표준물질 특성 및 그 인증값이 의도된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 휴지기관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9. 표준물질생산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10. 공인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④ 인정을 위한 관련표준(ISO Guide 34, ISO/IEC 17025 등)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을 중지하거나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갱신신청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관사정으로 인한 평가연기 등)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평가가 진행되는 공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갱신 인정 공고일 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을 중지한다.
- ⑥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에 의한 의견제출은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인정기구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며, 기술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인정기구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5항에 의한 의견제출 내용을 인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 ⑩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인정취소 등의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⑪ 공인기관은 인정취소와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⑫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이 사용중지된 기관의 인정자격 재개시에는 현장점검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 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⑬ 인정기구의 장은 제11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처리)** ① 인정제도 운영 또는 평가사 등과 관련하여 인정기구 및 공인기관에 이의, 또는 불만이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기술책임자 등

**제31조(기술책임자)** ① 공인기관은 표준물질생산 및 인증업무 수행능력과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물질 특성값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결과, 특성값, 불확도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① 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정, 부)는 표준물질 생산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KS A ISO Guide 34, 35 요건에 따라 표준물질이 제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표준물질 인증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다.

③ 기술책임자(정, 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별표2의 자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33조(기술책임자의 등록)** ① 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정, 부)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정, 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품질책임자 및 내부심사자)** ① 공인기관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정, 부)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정기구에 등록된 품질책임자(정, 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④ 공인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심사자는 해당분야(스킵)의 KOLAS 평가사 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내부심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물질생산 실무자)** ① 공인기관은 생산하는 표준물질의 형태, 범위 및 양에 적절한 특정유형의 표준물질 제조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기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표준물질생산 실무자를 별표3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생산 실무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7장 공인기관 의무

**제36조(인정기준 및 절차의 준수)** ①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인정기구가 규정한 인정절차 및 KS A ISO Guide 31 및 KS A ISO Guide 34, KS A ISO Guide 35에 따라 정한 해당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인기관은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정기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인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적용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평성 또는 독립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 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인정받은 분야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한다.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정을 언급할 때는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② 공인기관이 인정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적서가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은 명확히 인정범위에 포함된 소재지에서만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토록 해야한다.

④ 공인기관은 인정이 정지, 휴지, 취소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모든 문서상 및 광고, 홍보, 판촉 및 해당 업무 시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문서에서 KOLAS 인정에 관한 문구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 제8장 대외협력활동 등

**제38조(상호인정협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외국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에 관한 세부절차 및 추진방법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제정한 “시험기관 인정기구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인정기구의 표준물질생산기관에서 발행한 표준물질 인증서(이하 “외국 인증서”라 한다)는 KOLAS가 인정한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외국 표준물질 인증서는 인증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생산 항목 및 표준물질생산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표준물질코딩센터)** ① 인정기구의 장은 국제표준물질데이터베이스(COMAR/www.comar.bam.de)와 연계된 코딩센터를 운영하여, 국제적인 표준물질 보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코딩센터는 국제표준물질과 국내표준물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표준물질정보망으로써, 국내·외 표준물질 사용자들에게 표준물질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딩센터 지정 및 운영,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제 9 장 위탁기관 등

**제40조(위탁기관)** ①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품질보증 요건(제41조 관련)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기관을 활용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위탁기관이 표준물질생산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제15조 제1항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표준물질생산기관과 위탁기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업무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제41조(품질보증 등)** ① 시험기관이 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과 교정 업무에 대한 숙련도시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측정 심사활용과 샘플확인 등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제42조(e-KOLAS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평가서류 등을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서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6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고시(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1999.110호 및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389호, 제2011-0300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559호, 제2015-504호)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인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504호 : 2015.11.03)은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대하여는 인정기구의 장이 다시 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별표 1]

## 표준물질의 분류(운영요령 제14조 관련)

## 1. 화학조성(CHEMICAL COMPOSITION)

중분류	소분류
101. 철금속 ferrous metals	01. 저합금강 (low alloy steels) 02. 탄소강 (carbon steels) 03. 스테인레스강 (stainless steels) 04. 고합금강 (high alloy steels) 05. 공구강 (tool steels) 06. 특수저합금강 (special low alloy steels) 07. 특수강 (specialty steels) 08. 제강금속 (steelmaking alloys) 09. 주철 (cast irons) 10. 주강 (cast steels) 11. 철이원금속 (ferrous binary metals) 12. 철금속 중의 가스 (gases in ferrous metals) 13. 기 타 (other)
102. 비철금속 nonferrous metals	01. 알루미늄합금 (aluminum base alloys) 02. 동합금 (copper base alloys) 03. 납합금 (lead base alloys) 04. 아연합금 (zinc base alloys) 05. 니켈합금 (nickel base alloys) 06. 티타늄합금 (titanium base alloys) 07. 지르코늄합금 (zirconium base alloys) 08. 비철이원금속 (nonferrous binary metals) 09. 비철금속중의 가스 (gases in nonferrous metals) 10. 기 타 (other)
103. 미세분석용 microanalysis	01. 금속 (metals) 02. 비금속 (nonmetals) 03. 유리 및 세라믹 (glasses and ceramics) 04. 표면분석 (surface analysis) 05. 기 타 (other)

중분류	소분류
104. 고순도표준시약 high purity chemicals	01. 고순도 금속 (high purity metals) 02. 적정용 고순도 표준시약 (stoichiometry) 03. 열량측정용 (calorimetry) 04. 열분석기기 교정용 (thermal analyzer) 05. 기타 고순도 무기시약 (high purity inorganic chemicals) 06. 고순도 유기시약 (high purity organic chemicals) 07. 동위원소물질 (stable isotopic chemicals) 08. 기 타 (other)
105. 표준 용액 calibration solutions	01. 적정용 표준용액 (stoichiometry) 02. 분광분석용 단일원소 표준용액 (spectrometry, single element) 03. 분광분석용 다중원소 표준용액 (spectrometry, multi-element) 04. 음이온 표준용액 (anion) 05. 유기물분석용 표준용액 (organic standard solutions) 06. 무기물분석용 표준용액 (inorganic standard solutions) 07. 동위원소물질 표준용액 (stable isotopic chemical solution) 08. 기 타 (other)
106. 무기재료 및 광물 inorganics, rocks, ores	01. 암석 (rocks) 02. 흙 (soils) 03. 광석 (ores) 04. 시멘트 (cements) 05. 내화물 (refractories) 06. 세라믹 (ceramics) 07. 유리 (glasses) 08. 카바이드 (carbides) 09. 기 타 (other)
107. 화공원료 및 화석연료 industrial chemicals and fossil fuels	01. 석유/석탄 (petroleum/Coal) 02. 정제유 (refined petroleum) 03. 윤활유 (lubricants) 04. 나프타 (naphtha) 05. 염료 및 안료 (dyes and pigments) 06. 기타 유기화공약품 (organic chemicals) 07. 기타 무기화공약품 (inorganic chemicals) 08. 기 타 (other)

중분류	소분류
108. 식품 및 농업관련 물질 food & agricultures	01. 곡류 (cereals and grains) 02. 유제품 (dairy products) 03. 육류 (meat) 04. 어패류 (fishes and shellfishes) 05. 과일 및 채소 (fruits and vegetables) 06. 주류 및 음료 (alcohols and beverages) 07. 비료 및 사료 (fertilizers and animal feeds) 08. 농약 (agricultural chemicals) 09. 성장호르몬 및 농업용 약품 (growth hormone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s) 10. 기타 (other)
109. 환경오염물질 environmental pollutions	01. 수질오염 (water pollution) 02. 대기오염 (air pollution) 03. 토양오염 (soil pollution) 04. 해양오염 (marine pollution) 05. 퇴적물 및 슬러지 (sediments and water sludges) 06. 지표생물 (indicator organism) 07. 자연발생 생물학적 독성물질 (biological toxins) 08. 기타 (other)
110. 보건 및 산업위생 health and industry hygiene	01. 분진 및 비산재 (dust and fly ash) 02. 석면 (asbestos) 03. 여과재 (filter media) 04. VOC 및 fume (VOC and fume) 05. 페인트 (paint) 06. 기타 작업환경 및 실내오염측정 (working environment & indoor pollution) 07. 인체잔류 지표물질 측정 (body deposit of toxic materials) 08. 기타 (other)

중분류	소분류
111. 임상 및 생화학 물질 clinical and biochemical materials	01. 임상화학 지표물질 (indicator chemicals for clinical diagnosis) 02. 중금속 및 무기물 (heavy metals and inorganics) 03. 항생제 (antibiotics) 04. 혈액제제 (blood products) 05. 호르몬 (hormones) 06. 면역조절물질 (biological response modifiers) 07. 법의학 지표물질 (indicators of forensic science) 08. 영양소 (nutrients) 09. 의약품 (pharmaceuticals) 10. 기타 (other)
112. 가스 gaseous materials	01. 공정관리용 (process controls) 02. 의료용 (medical) 03. 공해측정용 (pollution controls) 04. 시험연구용 (testing & research) 05. 법의학용 (forensic science) 06. 고순도가스 (high purity gases) 07. 기타 (other)
113. 고분자 polymers	01. 고분자물질 조성 (polymers-composition) 02. 고분자물질 첨가제 (polymer additive) 03. 기타 (other)
114. 기타 화학조성 other chemical composition	

## 2. 물리적 특성 (PHYSICAL PROPERTIES)

중분류	소분류
201. 이온활성 ion activity	01. pH 교정 (pH calibration) 02. pD 교정 (pD calibration) 03. 이온선택성전극 교정 (ion-selective electrode calibration) 04. 전기전도도 (electrolytic conductivity) 05. 기 타 (other)
202. 고분자물질 특성 polymeric properties	01. 분자량 및 용융점 (molecular weight and melt flow) 02. 기 타 (other)
203. 열역학적 특성 thermodynamic properties	01. 삼중점셀 (triple point cell) 02. 응고점 및 용융점셀 (freezing point & melting point cell) 03. 고정점 및 연속흑체로 (fixed point & continuous blackbody furnace) 04. 저항온도계 (resistance thermometer) 05. 광온계 (pyrometer) 06. 열전대 (thermocouple) 07. 자기온도계 (magnetic thermometer) 08. 텅스텐스트립전구 (tungsten strip lamp) 09. 초전도고정점 (superconducting fixed point) 10.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11. 열팽창계수 (thermal expansion) 12. 비열 (specific heat) 13. 열확산도 (thermal diffusivity) 14. 융점 (melting point) 15. 기 타 (other)

중분류	소분류
204. 광학적 특성 optical properties	01. 표준전구 (standard l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광도 (luminous intensity)</li> <li>② 광휘도 (luminance)</li> <li>③ 전광선속 (total luminous flux)</li> <li>④ 조명도 (illuminance)</li> <li>⑤ 색온도 (color temperature)</li> <li>⑥ 분광복사조도 (spectral irradiance)</li> <li>⑦ 분광복사휘도 (spectral radiance)</li> <li>⑧ 분광복사속 (spectral radiant flux)</li> </ul> 02. 분광감응도 (spectral responsivity) 03. 렌즈디옵터 (lens diopter) 04. 굴절율 (refractive index) 05. OTF (optical transfer function) 06. 투과율 (transmittance) 07. 반사율 (reflectance) 08. 파장교정필터 (wavelength calibration filter) 09. 색표준 (color standard) 10. 기 타 (other)
205. 방사능 radioactivity	01. 방사성 용액 (radioactive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알파입자 (<math>\alpha</math>-particle)</li> <li>② 베타입자 (<math>\beta</math>-particle)</li> <li>③ 감마선 (<math>\gamma</math>-ray)</li> <li>④ 전자 (electron)</li> <li>⑤ 혼합 감마선 (mixed <math>\gamma</math>-ray)</li> </ul> 02. 점선원 (point 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알파입자 (<math>\alpha</math>-particle)</li> <li>② 베타입자 (<math>\beta</math>-particle)</li> </ul>

중분류	소분류
205. 방사능 radioactivity	③ 감마선 ( $\gamma$ -ray) ④ 혼합 감마선 (mixed $\gamma$ -ray) 03. 면적선원 (area source) ① 알파입자 ( $\alpha$ -particle) ② 베타입자 ( $\beta$ -particle) ③ 감마선 ( $\gamma$ -ray) 04. 방사성 기체 (radioactive gas) 05. 환경감시 (environmental monitoring) ① 알파 및 베타입자 ( $\alpha$ - and $\beta$ -particles) ② X-선 및 감마선 (X-ray and $\gamma$ -rays) ③ 혼합감마선 (mixed $\gamma$ -ray) 06. 방사선 약학 (radio pharmacy) ① 알파입자 ( $\alpha$ -particle) ② 베타입자 ( $\beta$ -particle) ③ X-선 및 감마선 (X- and $\gamma$ -ray) 07. Ra-226 용액 (Ra-226 solution) 08. 환경자연물질 (environmental natural matrix) 09. 기 타 (other)
206. 전기와 자기적 특성 electricity and magnetic properties	01. 비저항 (electrical resistivity) ① 도체 (conductors) ② 반도체 (semiconductors) ③ 부도체 (insulators) 02. 유전율 (dielectric constant) 03. 자화율 (magnetic susceptibility) 04. 자기모멘트(magnetic moment) 05. 기 타 (other)

중분류	소분류
207. 정밀측정 metrology	01. 배율 (magnifications) 02. 도금두께 (coating thickness) 03. 박막두께 (thin-film thickness) 04. 단차 (step height) 05. 규소기판상 오염 (contamination on silicon wafer) 06. 선폭 (line width : critical dimension) 07. 밀도 (density) 08. 액체점도 (liquid viscosity) 09. 기 타 (other)
208. 세라믹 및 유리 ceramics and glasses	01. 유리의 화학적 내구성 (chemical resistance of glass) 02. 유리 전기특성 (electrical properties of glass) 03. 유리 점도 (viscosity of glass) 04. 응력-광 계수 (stress-optical coefficient of glass) 05. 유리 용융점 (glass liquidus temperature of glass) 06. 기 타 (other)
209. X-선 분광 x-ray spectrometry	01.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02. X-선 스테이지 교정 (X-ray stage calibration) 03. 기 타 (other)
210. 기타 물리적 특성 other physical properties	

## 3. 공학적 특성 (ENGINEERING PROPERTIES)

중분류	소분류
301. 입자특성 sizing	01. 입자크기 (particle size) 02. 시멘트 탁도 및 균질도 (cement turbidimetry and fineness) 03. 분말의 비표면적 (surface area of powders) 04. 분체의 표준전하 (surface charge) 05. 기 타 (other)
302 표면특성 surface finish	01. 마 모 (abrasive wear) 02. 부 식 (corrosion) 03. 표면거칠기 (surface roughness) 04. 기 타 (other)
303 치 수 dimension	01. 평면도 (optical flatness) 02. 굴곡반경 (radius of curvature) 03. 기 타 (other)
304. 비파괴 평가 nondestructive evaluation	01. X-선필름감광도 (X-ray film step tablet) 02. 초음파 탐촉자 (ultrasonic probe) 03. 초음파탐상 표준시험편 (standard test block for ultrasonic testing) 04. 기 타 (other)
305. 화재연구 fire research	
306. 역학적 특성 mechanical properties	01. 경도 (hardness) ① 로크웰경도 C-스케일, 40이상/미만 (rockwell hardness C-scale, 40up/down) ② 로크웰경도 A-스케일, 60이상 (rockwell hardness A-scale, 60up) ③ 로크웰경도 B-스케일, 60이상/미만 (rockwell hardness B-scale, 60up/down)

중분류	소분류
306. 역학적 특성 mechanics properties	④ 로크웰경도 30N-스케일, 43이상 (rockwell hardness 30N-scale, 43up) ⑤ 로크웰경도 30T-스케일, 36이상 (rockwell hardness 30T-scale, 36up) ⑥ 쇼아경도 80이상/미만 (shore hardness 40up/down) ⑦ 브리넬경도 225이상/미만 (brinell hardness 225up/down) ⑧ 비커스경도 (vickers hardness) ⑨ 미소비커스경도 (micro-vickers hardness) ⑩ 극미소경도 (nano hardness) 02. 충격 (impact) ① low energy ② middle energy ③ high energy ④ super high energy 03 기타 (other)
307. 기타 공학적 특성 other engineering properties	

[별표 2]

##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32조 관련)

기술책임자는 다음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본요건

- ① KS A ISO Guide 31 및 34, 35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② 측정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측정불확도 산정 등 측정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③ 표준물질생산 실무자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학력 및 경력요건

구분	기준
학력	① 학사학위 이상 ② 측정분야에서 다음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 단, 이때의 경력은 실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력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

[별표 3]

### 표준물질생산 실무자의 자격기준(제35조 관련)

1. 표준물질생산 실무자는 해당분야에서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 ② 측정설비 및 장비 운용능력 보유
  - ③ 해당분야 측정 불확도 산정능력 보유
  - ④ 인증서 작성 및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 보유
  
2. 표준물질생산 실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에서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물질 제조, 측정/시험, 교정/장비의 유효성 확인 및 측정방법
  - ② 물질의 균질성 평가
  - ③ 물질의 안정성 평가
  - ④ 측정 결과에 기초한 특성값 부여
  - ⑤ 특성값의 불확도 평가
  
3. 해당분야에서 측정수행에 필요한 최소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해 당 분 야	최소 실무경력(년)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5	3	2

- ※ 의학분야의 실무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임상병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 비파괴분야 실무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나 KS B ISO 9712(비파괴검사-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규격에서 정한 분야별 레벨2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기타 다른 법에서 요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4]

### 표준물질생산기관과 위탁기관의 업무형태

(CRM 생산단계/업무)	관련문서	업무형태 유형							
		1	2	3	4	5	6	7	8
생산계획	KS A ISO Guide 34 KS Q ISO/IEC 17025	R	R	R	R	R	R	R	R
# 물질준비 <sup>(2)</sup>	KS A ISO Guide 34 KS Q ISO/IEC 17025	R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R	S <sup>(1)</sup>	R
# 균질성/ 안정성 시험	KS A ISO Guide 34 + KS Q ISO/IEC 17025	R	R	R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R
# 특성값 특성화 <sup>(2)</sup>	KS A ISO Guide 34 + KS Q ISO/IEC 17025	R	R	R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R	S <sup>(1)</sup>
특성값 부여 및 결정	KS A ISO Guide 34 + KS Q ISO/IEC 17025	R	R	R	R	R	R	R	R
특성값 승인 및 인증서 발행	KS A ISO Guide 34	R	R	R	R	R	R	R	R
# 취급 및 보관 (인증 후 시험 포함)	KS A ISO Guide 34 + KS Q ISO/IEC 17025	R	R	S	R	S <sup>(1)</sup>	S <sup>(1)</sup>	S <sup>(1)</sup>	R
# 배포 및 배포 후 서비스	KS A ISO Guide 34	R	R	S	R	S	R	S	R

기울임체로 작성된 업무는 표준물질생산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R = 표준물질생산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

S = 위탁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

비고 # : 위탁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표준물질생산기관은 반드시 위탁기관의 기술적인 역량을 보장함을 의미함

주 (1) 동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결론은 표준물질생산기관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

(2) 시험, 교정, 측정, 샘플링, 재료평가 및 생산에 포함된 다른 활동으로 KS Q ISO/IEC 17025의 관련부분을 준수하고, KS Q ISO Guide 34와 상호 참조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승 낙 서

본인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 ○○ 위원회 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위원회

년 월 일

성 명 인

##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 이 력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현 주 소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소 속			
직 장 주 소			
직 장 전 화		FAX 번호	
년 월 년 월	학 력 사 항		
년 월 년 월	경 력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

##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  
제도운영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에 따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다 음 -

1. 관련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이 심의대상기관의 평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한국인정기구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5.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인

##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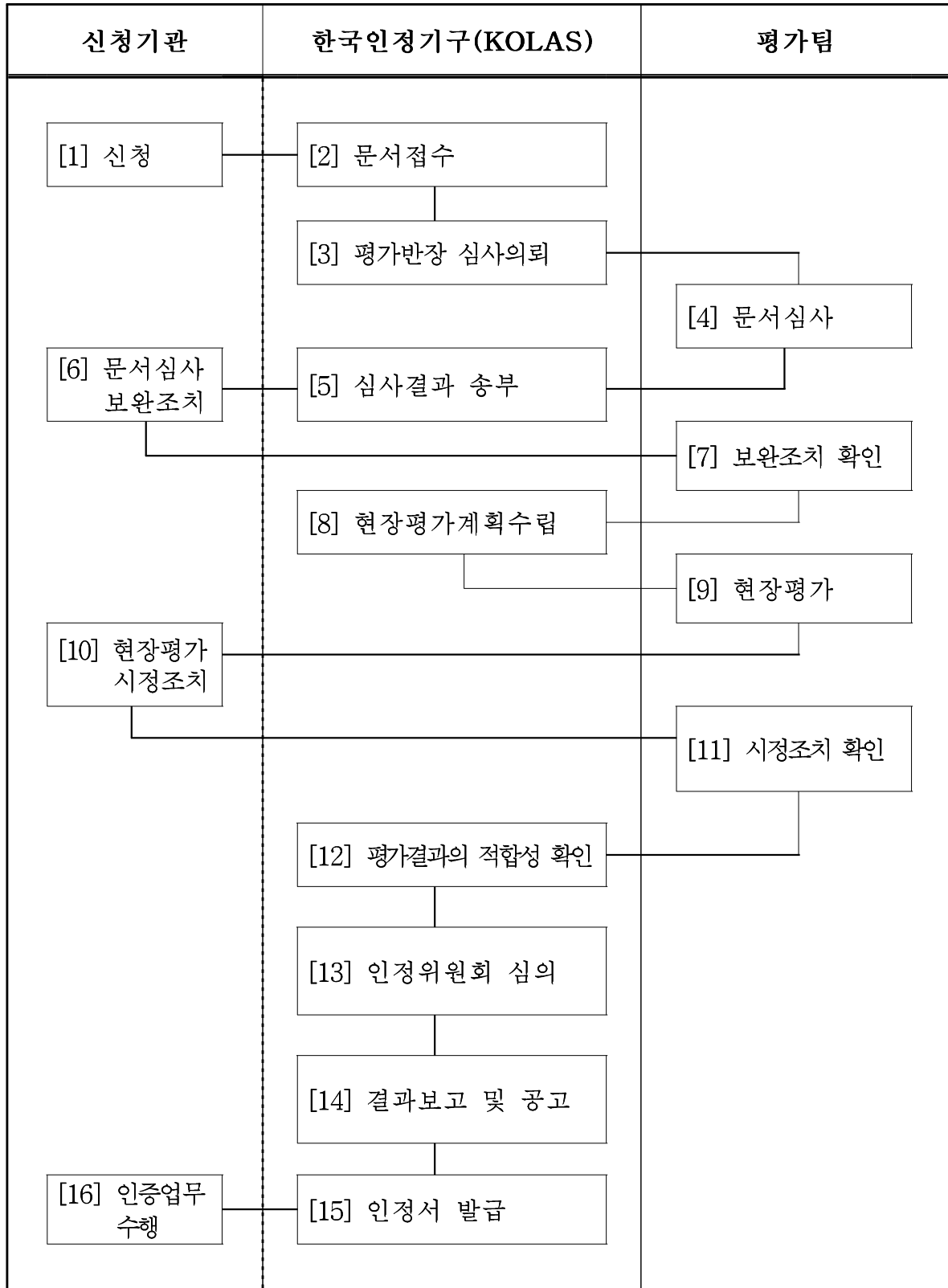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b>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신청서</b>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확대, <input type="checkbox"/> 갱신)								처리기간 : 90일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인정신청분야	별첨							
업무형태	1	2	3	4	5	6	7	8
	* [별표 4] 표준물질생산기관과 위탁기관의 업무형태 참조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한국인정기구장 귀하</b>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신청서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서식 제12호) 제출) 2. 인정신청분야 3. 제조 및 시험분석 설비 보유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표준물질 생산계획서 및 협력기관과의 업무협력 흐름도 6. 표준물질의 특성화 방법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 목록 7. 측정방법 및 지침서(물품의 제조, 시료채취, 취급, 보존, 보관, 포장, 위탁기관과의 수송, 측정불확도의 산정 및 측정데이터에 대한 분석 포함) 8. 인증값에 대한 불확도 총괄표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10. 매뉴얼 및 절차서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7호 서식]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서

## 기관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과 KS A ISO Guide 34 인정요건에 의거 위와 같이 공인된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 Name of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Laborator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Dur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 has been accredited as the Reference Material Produ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National Standards Act and Provision 20 of Regulations on Operation of Reference Material Producers for Accreditation. These criteria meet the requirements of KS A ISO Guide 34.



---

Administrator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b>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b>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F A X 번호		
	전자우편		
변 경 내 용			
<p>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에 의하여 공인기관 인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 하</b></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p>1. 인정서 (분실시는 제외)</p> <p>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서식 제12호) 제출)</p> <p>*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사항 변경신고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 인정서는 별도제출)</p>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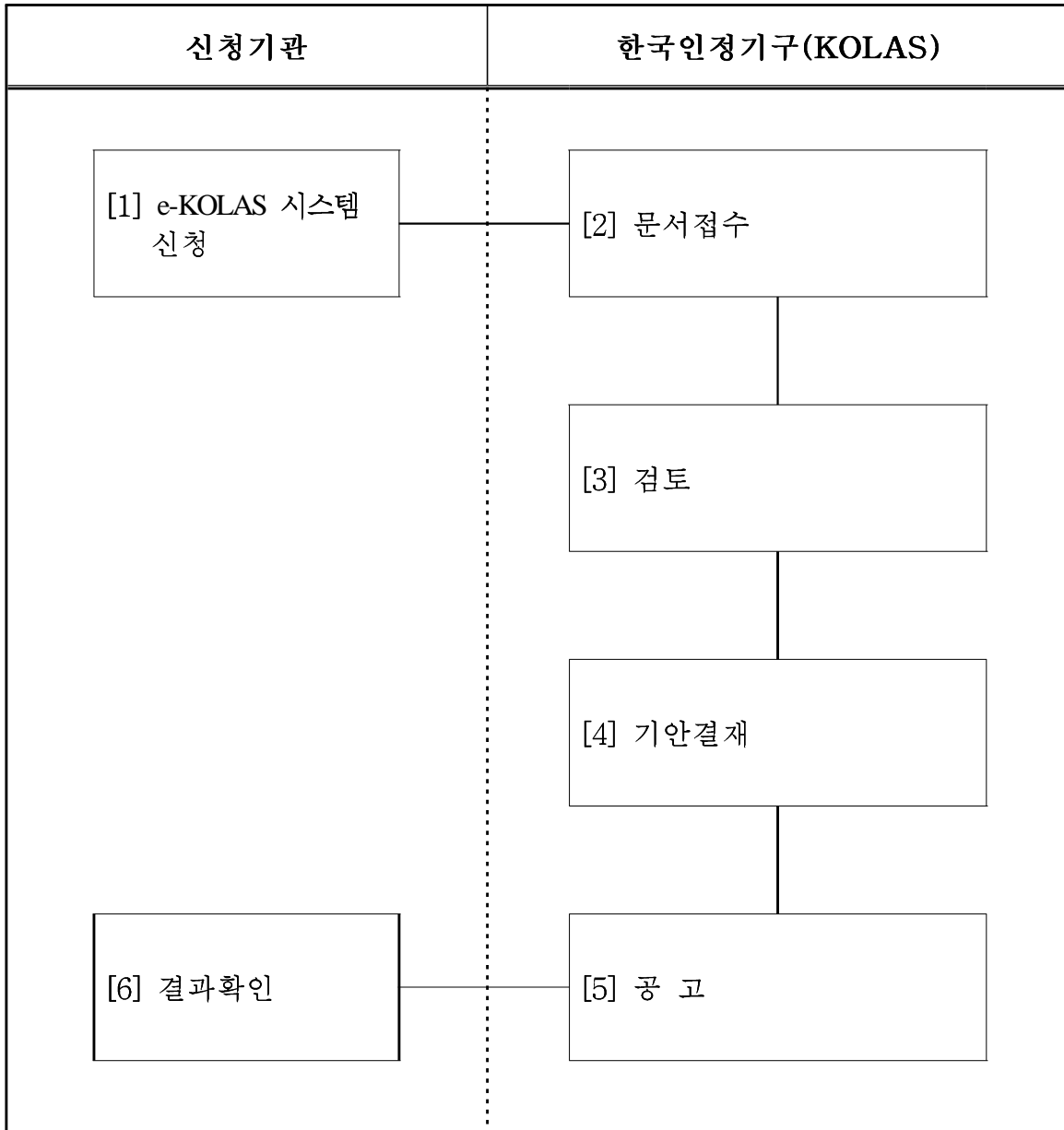
(뒷면)

신청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팀
<p>1. 현장평가가 없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1]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0px;">[5] 결과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2] 문서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3]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3] 기안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4] 인정서 재교부</div>	
<p>2. 현장평가를 진행할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1]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0px;">[9] 결과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2] 문서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3]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4] 현장평가 계획수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6]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7] 기안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8] 인정서 재교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0px;">[5] 현장평가</div>

[별지 제9호 서식]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장주소			
직장전화		fax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록신청사항)			
<input type="checkbox"/> 품질책임자(정, 부) <input type="checkbox"/> 기술책임자(정, 부)			
(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고등학교		
-	대학교		학사
-			석사
-			박사
(경력사항)			
연도	직장명	담당업무	비고
-		무	
-			
-			
(기존등록사항)			
<input type="checkbox"/> 품질책임자(정, 부) <input type="checkbox"/> 기술책임자(정, 부) <input type="checkbox"/> 실무자			
(KOLAS 교육훈련 사항)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과정	비고
	-		
	-		
붙임서류 : 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교육합격증, 보수교육 수료증(사본) 1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b>한국인정기구장귀하</b>			

[별지 제11호 서식]

<b>표준물질생산기관 대표자, 책임자 변경 신고서</b>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분야
	대표자				-
	품질책임자	정			-
		부			
	기술책임자	정			
		부			
<p>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에 의하여 공인기관 인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b></p> <p>구 비 서 류</p>					
<p>1.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및 붙임서류(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서식 제12호) 제출)</p> <p>2. 책임자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붙임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 증명서 1부, 교육 합격증, 보수교육 수료증(사본)1부)</p> <p>*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12호 서식]

<b>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b>								
<b>대상자(대상기관)</b>								
<p>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 padding: 5px;">이용 사무(이용 목적)</th> <th style="width: 33%; padding: 5px;">공동이용 행정정보</th> <th style="width: 33%; padding: 5px;">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공인기관의 인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법인등기부등본</td> <td></td> </tr> </tbody> </table>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공인기관의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공인기관의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p>2.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인정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p> <p>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p> <p>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b>작성 방법</b>								
<p>1. 이용사무(이용 목적)의 동의 여부를 서명(또는 인)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p> <p>2.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기재합니다.</p> <p>3. 성명 및 전화번호 :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직장·주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p> <p>*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